-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03호

2020. 09. 17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09. 09. 윤인숙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0. 09. 11. 복지건설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
2020. 09. 17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윤인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.

○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
○ 지원계획 수립 및 조사, 연구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6조).

○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(안 제7조).

○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.

○ 민간단체 지원을 규정함(안 제9조).

○ 표창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훈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며,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
- 아동의 삶의 질 및 인지, 사회성 발달 전반에서 여가 및 놀 권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함. 실제로, 아동의 수면권과 놀 권리의 중요성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(2015-2019)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핵심 과제임. 하지만, <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> 결과에 따르면, 만 9세~17세의 아동의 70%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며, 시간압력 사유의 70.4%가 학습과 관련된 사항이었음.
-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<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>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9분인데 비해,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이나 됨. 마찬가지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아동행복지수(2019)에 따르면, 주요활동 권장기준 대비 수면 시간은 77.3% 부족하며, 학습 시간은 69.7% 과다, 운동시간은 74.2% 부족하다고 조사됨.
- 또한 OECD주요국의 '아동' 삶의 만족도 지표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0.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점을 받음. 1위는 네덜란드로(94.2점) 이었으며, 우리나라 다음으로 순위가 낮은 루마니아(76.6점)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발생함[7].

7) 보건복지부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, 2014)

- 이를 종합하면, 아동기에 겪는 놀이와 학습의 심각한 불균형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,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음.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,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. 이를 고려할 때,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것임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.
-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양천구의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뿐 아니라 양천구에 생활 기반을 둘 수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조문으로 사료됨.
-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「아동복지법」제4조제6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UN의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함)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 그 중 제5조제3항은 지원계획이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을 대신하려는 것임. 이는 <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>이 여가, 놀 권리뿐 아니라 차별받지 않은 권리,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·지원 받을 권리 등 더욱 광범위한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 및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.
- 안 제6조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별 문제는 없음.
- 안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구 차원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

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안 제8조에서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의2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,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. 한편, 위원회명은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성한 '놀이혁신위원회'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9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10조는 표창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음.

○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, 아동들이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, UN의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제31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,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